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16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이해민 · 조인철 · 이정현
김우영 · 정춘생 · 이훈기
손명수 · 차규근 · 김준형
강경숙 · 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존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훼손·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존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존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7일 이내에 침해사고의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제6항(중전의 제4항) 및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

에”로,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보존 의무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소멸한다.

제48조의8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 여부

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1(불리한 자료 추정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그 보존을 방해하였을 경우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한다.

제71조제1항제13호의2 중 “제48조의4제5항에”를 “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7일 이내에 침해사고의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u>제1항 및 제5항에 따른</u>-----
⑤ <u>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u><신설></u>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u>

<신 설>

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보존 의무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제 신청을 수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

락을 것으로 보는 날부터 소멸한다.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⑤ -----
제4항에-----

-----.

⑥ -----

제4항에-----

-----.

⑦ -----
제4항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

-----.

⑧ -----
제4항에-----

-----제6
항에-----

-----.

⑨ -----
-----제8항
에-----

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 절차,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③ ~ ⑧ (생략)

<신설>

-----.

⑩ 제5항에-----
-----제6항에-----
-----제8항에-----

-----.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 여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1(불리한 자료 추정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

	<u>훼손·변조하거나 그 보존을 방해하였을 경우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한다.</u>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u>제48조의4제5항에</u>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3의2. <u>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에</u> -----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